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National Research Facilities & Equipment Center

2025년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 신규과제 신청요강

- ▶ 2025년도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등 세부 내용은 별첨(매뉴얼) 자료 참조

2025. 1.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융합인프라실

문의절차 및 문의처

□ 문의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자료*(공고문·신청요강·FAQ) 확인 후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및 한국연구재단(NRF) 홈페이지 참조

- (문의 전 확인) 공고문, 신청요강, FAQ를 반드시 읽어보세요.
- (문의순서) ①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에 먼저 문의
② 주관연구기관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에 문의

□ 신청 및 접수 시스템 관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및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 관련
 - IRIS 운영단 콜센터 : ☎ 1877-2041(부가통화)
 - IRIS Q&A : IRIS 홈페이지 > 알림·고객 > 시스템·서비스문의 > 사용문의 게시판

* IRIS시스템 장애는 한국연구재단 및 NFEC에서 지원이 불가합니다.

□ 과제 및 평가 관련 문의 : 과제내용, 지원조건 등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융합인프라실
: ☎ (042) 865-3981, 3956, 3975, 3691, 3489

신규과제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1 2025년도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의 신규과제 신청 접수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접수기간	2025. 2. 10.(월) 09:00:00 ~ <u>2. 26.(수) 18:00:00</u>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5. 2. 10.(월) 09:00:00 ~ <u>2. 28.(금) 18:00:00</u>
신청절차	연구(책임)자 접수▶주관연구기관 승인▶신청완료

- ※ 연구(책임)자는 접수 마감일('25. 2. 26.(수) 18:00)까지 신청 완료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됨
- ※ 접수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 완료를 권장하며, 신청 기간 내 접수 미완료 시 별도 구제 불가**

2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연구(책임)자 접수기간 시작 전에 준비 바랍니다.

[1] 연구(책임)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전환 동의(국가 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 전원 등록하며, ①, ②, ③ 모두 필수

[2]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책임)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 알림·고객 > R&D 신문고 활용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1]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 운영단)) 및 [별첨(매뉴얼)1-2]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 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00대학교>로 과제 신청 중 기관대표자가 미등록되어 있는 경우, IRIS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기관] 탭 [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항목에서 [지원인력추가]를 통해 <00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를 <00대학교> 대표자로 등록 가능
- 승인권한은 본교<00대학교> 및 산학협력단<00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본교 또는 산학협력단으로 신청한 과제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연구과제 신청 체크리스트

- ☞ 신규과제 신청 시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문제없이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 전/후 준비사항을 모두 충족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외에도 신청요강에 명시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검토 시 탈락될 수 있음

신청 전 체크리스트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신청해야 함을 알고 있으며,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모두 조치하였고, 미비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및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 가입 및 이용방법에 관한 질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IRIS 콜센터 1877-2041로 문의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 연구(책임)자 접수 마감일 18:00:00에 시스템 접속이 일괄 차단되므로 반드시 18:00:00까지 접수를 완전히 완료해야 함을 알고 있다. ※ [최종확인] 버튼 클릭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반드시 클릭해야 함을 알고 있다.	
■ 과제 신청 전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에 참여연구자 전원의 필수입력사항(기본정보, 취득학위, 경력 등)을 모두 입력하였고, 미비 시 신청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다.	
■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접수는 가능하나 접수마감 후 사전검토를 통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 과제 접수 전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위한 공간과 향후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운영인력 등의 지원에 대해 주관연구기관과 반드시 협의하고, 과제 접수하여야 함을 알고 있다.	
■ 과제의 평가방법 및 일정을 확인하였다.	
■ 신청하고자 하는 유형을 사전에 확인하였고, 해당 유형의 지원내용(지원내용, 연구비 등)을 숙지하였다.	
■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는 구축완료 후 30일 이내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하여야 하며, ZEUS를 통해 운영일지 및 유지보수일지 작성, 장비 예약서비스를 통한 공동활용을 필수로 실시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	

신청 중 체크리스트	확인
■ 제출완료 후 수정하려면,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반려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반드시 다시 [최종확인] 버튼 클릭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연구(책임)자 제출완료로 인정됨을 알고 있다. ※ 최종확인 오류가 없어야만 제출버튼 클릭가능	
■ 제시된 연구계획서 작성 분량제한을 준수하였고, 작성분량 초과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	
■ 연구비 신청금액과 금액단위를 정확히 입력하였다.	

신청 후 체크리스트	확인
■ 신청하고자 하는 과제 유형 및 분야에 제대로 지원하였다.	
■ 접수 후 접수내역을 출력하여 신청내용 및 연구비 단위 등을 검토하였다.	
■ 업로드한 연구계획서 등 첨부파일에 대한 확인(최종본, 암호해제, 오류확인)을 하였다. ※ 업로드 파일 전체 용량은 2GB(각 첨부파일별 용량은 500MB)를 초과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CONTENTS

I. 2025년도 사업 개요

- | | |
|----------------------|---|
| 1. 사업목적 및 지원근거 | 1 |
| 2. 지원내용 및 규모 | 1 |

II. 지원자격 및 제한사항

- | | |
|------------------------|---|
| 1. 신청 및 참여자격 | 4 |
| 2. 신청 및 참여 제한 사항 | 7 |

III.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 |
|----------------------|----|
| 1. 신청방법 및 절차 | 10 |
| 2. 신청기간 및 제출자료 | 11 |

IV. 신청절차 및 평가사항

- | | |
|--------------------|----|
| 1. 평가절차 및 방법 | 14 |
| 2. 평가항목 및 내용 | 16 |

V. 연구비 지급 및 관리

- | | |
|----------------------|----|
| 1. 연구비 지급 | 20 |
| 2. 연구비 사용 및 관리 | 22 |

VI. 향후 관리사항

- | | |
|---------------------|----|
| 1. 지원중단 과제 관리 | 24 |
| 2. 성과관리 | 25 |

VII. 기타 사항

- | | |
|-----------------------------|----|
| 붙임 1. 자주 묻는 질문 (FAQ) | 31 |
|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 44 |
| 3. 기술분야 및 연구장비 표준분류체계 | 48 |
| 4.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안내 | 49 |

I 2025년도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및 지원근거

□ 사업목적

- 대학 내 산재된 연구장비를 연구분야별 집적·공동활용하고 장비전담운영인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운영 지원
- 대학이 연구거점으로서 글로벌 수준의 혁신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첨단R&D 장비 도입 및 장비전담운영인력 육성·운영 지원

□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10조(연구기자재 등의 확충)
-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 및 규모

구 분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거점 네트워크 구축 지원 (시범)	인프라 고도화 지원		
	신규지원			후속지원					
	첨단 분야	소외 분야	지역 특화	도약형	자립형				
지원대상	대학부설연구소, 대학공동실험실습관 ※ 4대 과기원 제외	핵심연구지원센터 (과제 종료 후 2년차 이하)	핵심연구지원센터, 인프라 고도화 시설	핵심연구지원센터, 대학부설연구소, 대학공동실험실습관 ※ 4대 과기원 제외					
지원기간	6년 (3+3년)	3년	5년 (3+2년)	5년 (3+2년)	첨단R&D 장비 구축 및 관련 운영비				
지원내용	센터운영비			네트워크 구축 운영비	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및 개선/장비전담운영인력 육성(교육)·운영/공동활용 활성화 등				
	장비이전비/유지보수비/ 성능향상비/장비전담운영인력 인건비/교육훈련비 등	성능향상비/ 장비전담운영 인력인건비/ 교육훈련비 등	유지보수비/ 장비전담운영 인력인건비/ 교육훈련비 등	물리·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비/ 네트워크 활성화/ 거점센터(시설) 운영·관리비 등	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및 개선/ 장비전담운영인력 육성(교육)·운영/ 공동활용 활성화 등				
지원단가 (간접비 포함)	평균 연 450백만원 내외 ※ 21년 지정공모 2개소 별도 산정	평균 연 300백만원 내외	평균 연 150백만원 내외	* 장비구축비 : 평균 5,000백만원 내외 (1년차) * 운영비 : 평균 연 500백만원 이하					
지원과제	5개 내외	5개 내외	1~2개	9개 내외					
비고	3책 5공 제외								

《 과제 연차별 지원예산(예시)》

(단위 : 억원)

구 분		1년차 (9개월)	2년차 (12개월)	3년차 (12개월)	4년차 (12개월)	5년차 (12개월)	6년차 (12개월)	합계
①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신규지원 (3+3년)	3.375 내외 (평균)	4.5 내외 (평균)	25.875				
	후속지원 (3년)	2.25 내외 (평균)	3 내외 (평균)	3 내외 (평균)	X	X	X	8.25 (평균)
②거점 네트워크 구축 지원 (3+2년)		0.75 내외 (평균)	1 내외 (평균)	1 내외 (평균)	1 내외 (평균)	1 내외 (평균)	X	4.75 (평균)
③인프라 고도화 지원 (3+2년)	장비 구축비	50 내외 (평균)	-	-	-	-	X	50 (평균)
	(운영비)	3.75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X	23.75 (이하)
	합 계	53.75 내외	5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X	73.75 내외

* 과제 신청 결과, 예산 사정, 단계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원과제 수, 지원 예산 등 일부 변동 가능

□ 지원분야 및 유형

- 구축 및 운영하고자 하는 분야의 성격을 고려하여 지원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 ①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과제 유형 및 분야 》

유형 및 분야		주요 내용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25 과제 수	
핵 심 연 구 지 원 센 터 조 성	신 규 지 원	첨단 분야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최신 연구경향에 부합하는 핵심적·도전적 연구 수행 지원	• 수월성·역량 중심으로 전국단위 선정	2개 내외
		소외 분야	트렌드, 유행을 타지 않아 민간 투자가 저조한 기초과학 분야 연구 수행 지원	• 10대 기초과학 분야 중 센터가 없거나 과소한 분야 지원	1개 내외
		지역 특화	지역 산업체, 지역 특화 전략기술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장비 활용 지원, 분석 서비스 중심의 핵심연구지원센터 운영	• 비수도권을 선정하되, 센터가 과소한 지역 우대	2개 내외
	후 속 지 원	도약형	기존 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센터의 R&D 지원 역량 제고 * 신규장비 구축 해당 없음	• <u>연구장비 업그레이드 및 운영비 등 지원</u>	3개 내외
		자립형	대학 내·외 장비 활용 수요 확대, 분석 서비스 활성화 등 자체수입 증대에 바탕을 둔 재정 자립 가능성 중심	• 장비 유지보수비, 센터 운영비 등 <u>최소한의 항목과 예산 지원</u>	2개 내외

* 유형 및 분야별 과제 신청 결과, 예산 사정 등에 따라 지원과제 수 변동 가능

《 ②인프라 고도화 지원 과제 유형 》

- 과제별 장비 구축비(20억원 이상 ~ 70억원 이하)를 1년차에 일괄 지원하고, 장비전담운영인력 육성 등 운영 예산 연 5억원 이하(단, 1차년도는 과제기간을 고려하여 3.75억원 이하 지원)를 5년간 지원함
※ 1차연도 내 장비 구축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연구개시일부터 12개월 이내 장비 미구축 시 불이익 적용 가능(운영비 예산삭감 또는 과제 협약해약, 소속 대학 '26년도 인프라 고도화 과제 선정 제외 등)

유형 구분	장비 구축비 예산 범위 (※성능향상비 제외)	지원 내용	'25 과제 수
인프라 고도화	20억원 이상 70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일장비 또는 시스템장비 중 택일<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일장비(최대 2점 이내) : 1개의 장비로 필요한 연구활동 가능- 시스템장비 : 상호 연계되는 복수의 장비가 구축되어야 필요한 연구활동 가능 (평가 시 시스템장비가 명확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1억원 미만 소형장비는 신청 불가)	9개 내외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정의)

- **개별 연구시설장비(단일장비)** : 본래의 구축 목적에 따라 성능을 발휘하는 하나의 주장비로 구성된 연구 시설장비를 말하며, 주장비에는 여러개의 보조장치 및 부대장비를 포함할 수 있음
- **시스템 연구시설장비** :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개별 연구시설장비를 결합하여 기존 구성 요소와 차별화된 기능을 구현하는 연구시설장비

II 지원자격 및 제한사항

1 신청 및 참여자격

□ 연구개발기관(시설)의 자격

과제	유형	지원 자격
①핵심연구지원 센터 조성	신규 지원	학과 또는 특정 분야 등의 단위로 연구장비를 연구분야별 집적·공동활용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4대 과기원 제외) 내 설치된 대학부설연구소¹⁾, 공동실험실습관²⁾ ※ 인프라 고도화 지원 과제를 현재 수행 중인 시설은 신청 불가
	후속 지원	핵심연구지원센터로 지정 운영 과제 종료 후 2년 차 이하인 핵심연구지원센터
②거점 네트워크 구축 지원		우수 핵심연구지원센터, 인프라 고도화 시설을 연구거점으로 R&D시설·장비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핵심연구지원센터 및 인프라 고도화 시설 ※ 주관연구기관을 포함한 산·학·연 등 5개 내외의 협력기관 참여 필수 ※ 주관기관 이외의 타 핵심연구지원센터, 인프라 고도화 시설도 협력기관으로 포함 가능
③인프라 고도화 지원		특정 분야 단위로 연구장비를 집적하여 연구활동 및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대학(4대 과기원 제외) 내 설치된 대학부설연구소¹⁾, 공동실험실습관²⁾, 핵심연구지원센터 ※ 핵심연구자 1인 이상이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로 반드시 참여해야 함

1)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홈페이지(www.kci.go.kr)에 ‘**대학부설연구소**’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2) 대학 내 정식으로 조성된 ‘**공동실험실습관**’ 및 ‘**공동기기원(공동기기센터)**’

※ 분야·유형별로 지원 자격이 다르므로 해당 과제 및 분야·유형의 지원자격 요건 확인 후 지원

- (ZEUS 시설 등록) 각 시설은 신청마감일('25. 2. 26.(수)) 기준 ZEUS* 내 연구 시설(www.zeus.go.kr/fac)에 등록·승인 완료된 시설만 신청

*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www.zeus.go.kr), 이하 ‘ZEUS’)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ZEUS 시설 등록은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1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전 준비를 통해 신청·승인 완료 필요

□ 연구책임자의 자격

- 지원대상 시설에 소속된 국내대학 이공분야 전임교원

※ 시설(조직)의 長 외에 소속 연구원도 본 과제의 연구책임자 자격 가능

※ 총 과제기간 내 전임교원 자격을 유지해야만 연구책임자로 자격 가능

※ IRC 및 IBS 연구책임자는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및 인프라 고도화 지원 과제 연구책임자로 참여 불가

▶ 전임교원은 한국연구재단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및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조사”의 “전임교원” 인정 기준을 적용

□ 핵심연구자의 자격 (* 인프라 고도화 지원 유형 해당)

- 핵심연구자란 첨단연구장비를 직접 활용하여 수월적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자를 말하며, 다음 각 사항을 충족한 자로 반드시 최소 1인 이상을 포함해야 함
 -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을 받는 당해연도 정부지원금 기준 과제 예산의 합이 연 5억원 이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연구책임자¹⁾로,
 - ※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를 말함(공동, 위탁 제외)
 - ② 최근 5년간의 SCI급 논문 등 연구성과²⁾가 탁월한 해당 대학에 소속된 자
 - ※ 본 과제 연구책임자와 핵심연구자는 중복 가능
 - ※ 지원대상 시설이 아닌 해당 대학 내 타 소속 연구진도 핵심연구자로 참여 가능
(단, 해당 연구진의 참여의향서 제출 필요)
 - ※ IRC 및 IBS 연구책임자는 핵심연구자로 참여 불가

《 인프라 고도화 과제 수행 역할 구분 》

구분	연구책임자	핵심연구자
수행 역할	연구장비 구축·관리·지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연구책임자)	첨단연구장비 활용 → 연구성과 창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참여연구자)
과제지원금 활용	장비 구축비 및 운영비 지원 (연구비 無)	본 과제 내 연구비 지원 없음

-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로 ‘3책5공 적용제외 과제’는 불인정하며,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25.2.26.) 수행 중인 과제가 당해연도 최종종료(연차/단계 종료는 제외)되는 경우 역시 불인정함
 - ※ 핵심연구지원센터 지원 과제의 경우 ‘3책5공 적용제외 과제’에 해당하므로 불인정함
 - 2) 최근 5년간(‘20. 1. 1. 이후)의 논문, 특히(지식재산권)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 장비전담운영인력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자격

- 장비전담운영인력은
 - ①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고용하거나, 과제개시 후 3년(단계인 경우 1단계 사업 기간)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정규직 고용·전환이 불가능한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② 사업 지원 종료 후 3년간 의무 고용해야 함
 - ※ 학생연구원, 인턴, 파견직원 등은 장비전담운영인력이 될 수 없음

과제	장비전담운영인력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	장비전담운영인력 1인 이상이 참여연구원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각 전담운영인력의 인건비는 본 과제에서 50% 이상 충당하여야 함 ② 전체 전담운영인력 인건비의 합은 직접비의 20% 이상이어야 함
인프라 고도화 지원	장비전담운영인력 1인 이상이 참여연구원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각 전담운영인력의 인건비는 본 과제에서 30% 이상 계상하여야 함 ② 전체 전담운영인력 인건비의 합은 첨단R&D 장비 구축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10% 이상 이어야 함

-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은 **연구(근접)지원인력 1인 이상이 참여연구원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함**

2 신청 및 참여 제한 사항

- ☞ 신청 대학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구성·운영하여야 함
- ☞ 연구책임자, 핵심연구자 및 참여연구자의 신청제한 및 참여제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요건검토 및 최종선정 이후에라도 선정 탈락 처리

- (4대 과학기술원) 4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은 신청이 제한됨
- (재정지원제한대학) 2025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청이 제한됨
-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이 연구책임자 신청마감일 전일('25. 2. 26.(수))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 연구개시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연구자는 과제 선정 제외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으로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 5공) 적용 제외
 - ※ 제외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 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 인프라 고도화 지원은 타 집단연구사업* 중복 신청·수행 허용
 - * 대학중점연구소, 선도연구센터(IRC 제외), 기초연구실 등

3 우대 및 감점 사항

□ 우대 사항

-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과제의 경우, 기관 의무 부담금 초과 납부시 우대

- 1단계 서면평가 시 우대

※ 정부지원금(간접비 포함)의 10%를 기관부담금(현금)으로 의무 부담

-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과제 중 '지역특화' 유형의 경우 지역 산업체, 지역 특화 전략기술*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하며, 비수도권을 선정하되 센터가 과소한 지역을 우대

*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기본방향('24년 기준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지역특화(주력) 산업('24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현황자료) 등을 토대로 선정평가시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

□ 감점 사항

- 제재처분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평가점수 감점 부여

- 접수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0% 이내 감점 부여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각호

4 유의사항

□ 접수 시 유의사항

-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입력사항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고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만 신청이 유효함

※ 제출완료 후 수정하려면,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반려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반드시 다시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함

※ [최종확인] 오류가 없어야만 [제출] 버튼 클릭 가능

- 주관연구기관 승인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 승인"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과제로 인정

※ 신청자는 주관연구기관 승인 여부를 최종 확인 요망(소속기관에 문의)

-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 마감시간 이후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 자동 차단되어 신청 불가
 -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접수가 완료([제출] 버튼 클릭)되어야 함
- 접수 완료 이후 지원분야 및 기술분야(8대)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필수자료 미제출(파일오류, 암호화 등으로 확인 불가 포함)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연구비는 총 금액 기준 천원 미만 단위 절사

□ 수행 및 운영 시 유의사항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연구장비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비 마련을 위해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신청·운영**
 - * 과제 기간 동안 적립한 연구장비 유지보수비를 과제 종료 후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장비비의 적립·이월을 허용하는 제도(붙임 3 참고)
 - ** 해당 제도는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신청 가능하며, 과제 신청서 제출 시에는 별첨05(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협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함. 단, 반드시 ‘공동활용시설’ 단위로만 신청하여 운영토록 함
- (ZEUS 등록) 지원 대상 장비(①기구축된 이전·설치 장비, ②신규 도입 구축 장비)는 반드시 시설 공간으로 이전하고, ZEUS 상 미등록 장비는 ZEUS 등록
 - ※ 신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는 구축완료 후 30일 이내에 ZEUS에 등록하고 ZEUS를 통해 운영일지 및 유지보수일지를 작성해야 함
- (공동활용 실시) 집적된 장비 또는 신규 도입 구축 장비는 ZEUS 장비 예약 서비스를 통해 시설 명의의 분석서비스로 공동활용 실시(‘실시간 예약장비’로 등록)
 - ※ 조성된 시설은 대·내외 개방(전면 또는 부분)을 원칙으로 하고, 개방에 관한 세부 사항(상시/요일 지정 등)은 시설별 운영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독립적 체계·운영) 독립된 계정에 의한 예산·수익금 사용·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독립된 시설 단위 조직 체계·운영규정 및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공간 축소 변경 금지) ‘인프라 고도화 지원’ 과제는 선정 시 제출한 설치 공간에 대하여 이후 축소 변경을 금지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연구계획서 및 관련 자료는 접수마감 이후 수정 불가하며, 제출된 계획서 및 자료로만 평가 시 반영함

III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및 절차

- ▶ 2025년도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IRIS*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을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IRIS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연구(책임)자는 접수기간 시작 전에 준비

① **연구(책임)자** :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전환 등의(국가 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 전원 등록하며, ①, ②, ③ 모두 필수

② **주관연구기관**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등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책임)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 알림·고객 > R&D 신문고 활용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1]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 운영단)) 및 [별첨(매뉴얼)1-2]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00대학교〉로 과제 신청 중 기관대표자가 미등록되어 있는 경우, IRIS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기관] 탭 [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항목에서 [지원인력추가]를 통해 〈00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를 〈00대학교〉 대표자로 등록 가능
- 승인권한은 본교〈00대학교〉 및 산학협력단〈00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본교 또는 산학협력단으로 신청한 과제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2 신청기간 및 제출자료

□ 신청 접수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접수기간	2025. 2. 10.(월) 09:00:00 ~ 2025. 2. 26.(수) 18:00:00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5. 2. 10.(월) 09:00:00 ~ 2025. 2. 28.(금) 18:00:00

[신청 관련 주의사항]

-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연구(책임)자는 신청 접수마감일(**25. 2. 26.(수) 18:00:00**) 까지 접수를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 승인마감일(**25. 2. 28.(금) 18:00:00**) 까지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됩니다.
 - ▶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은 마감시간의 신청 폭주를 감안하여 사전에 제출 및 승인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해당 기간 내에 접수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 구제절차 없음**
- ▶ 제시된 연구계획서 작성분량을 위반할 경우, 평가 시 초과분량에 대한 평가 마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참여제한자 외에는 신청자격을 미충족 하더라도 과제접수는 가능하나, 접수마감 후 사전검토를 통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관련 주의사항]

- ▶ 반드시 제공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며, 각 제출서류별 제시된 조건을 준수하여 작성
- ▶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 ▶ 접수마감 후 사전검토에서 필수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파일 오류, 암호화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포함) 평가대상에서 제외

[연구실적 작성 관련 사항]

- ▶ 최근 5년 이내('20. 1. 1. 이후) 실적에 대해서만 작성

※ 단, 성별에 관계 없이 연구자 본인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이 '20. 1. 1. 이후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을 '20. 1. 1. 전으로 반영하여* 실적 작성 가능

※ 대표적 연구실적 작성서식 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증빙서류 첨부 필수이며, 증빙서류가 없거나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실적 제출 시 해당 실적은 제외하고 평가 실시

* (예시) '20. 1. 1.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20. 1. 1. 이후가 아닌 '19. 1. 1. 이후 실적부터 제출 가능

□ 제출자료

- (온라인 입력) 기본정보, 과제요약정보, 연구기관 및 연구자 정보(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포함), 연구비 내역, 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등 정보 입력
- (제출자료 업로드) 연구계획서(연구내용), 대표적 연구실적 및 연구비 증빙 요약문, 동의서, 기관지원 및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협약서 등 필수 제출자료 업로드

* 신청자격 관련 추가서류 제출 해당자는 관련 서식 작성하여 추가 제출

* 모든 파일은 PDF파일 형태로 제출(압축파일 제출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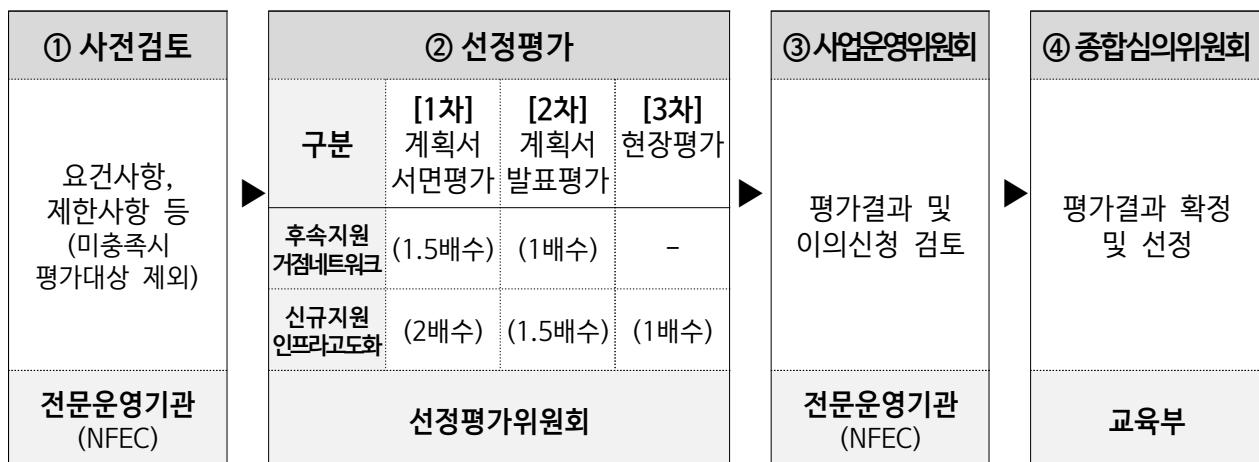
항 목	작성 시 유의사항	비고
① 연구계획서(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분량) <u>20페이지 이내 제출</u> ※ 제시된 작성분량 초과 시, 연구계획서 평가 시 초과 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별첨 02
② 핵심연구자 관련 대표 연구실적 및 연구비 증빙자료 등 <u>(인프라 고도화 지원 과제)</u> <u>※ 1개의 파일로 제출</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연구실적 요약문 및 대표 연구실적 증빙자료 제출 ▶ 최근 5년간('20. 1. 1. 이후) 실적에 대해서만 작성 ※ 핵심연구자의 논문, 특허, 기타실적을 합하여 10개 이내 작성 ※ 각 실적별로 요약문은 1쪽 이내로 기술 후, 증빙자료 첨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을 받는 당해연도 정부지원금 기준 과제 예산의 합이 연 5억원 이상 연구비 내역 요약문 및 증빙자료 제출 ※ 전체 연구비 내역(연구책임자, 사업명, 부처명, 기간, 금액 등)에 관한 요약문을 1쪽 이내로 기술 후, 증빙자료 첨부(사업계획서상 적인 날인된 표지 위주로만) ▶ 핵심연구자가 지원대상 시설이 아닌 해당 대학 타 소속 연구진의 경우, 참여의향서(양식 자유) 제출 	별첨 03
③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 연구자 작성 필수 	별첨 04
④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협약서 또는 지정서 <u>※ 지원대상 시설 단위 통합관리제 계정</u> <u>※ 지정기관 목록은 연구시설 · 장비종합정보</u> <u>시스템(ZEUS, www.zeus.go.kr) 공지</u> <u>사항에서 확인</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은 1차년도 사업기간 이내 '연구시설·장비비 통합 관리제' 신청 및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함 ※ 1차년도 이내 미지정 또는 제도운영 중단 시, 과제지원 중단, 연구비 삭감, 잔액 반납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사업기간 및 정부 지원 종료 후, <u>5년</u> 동안 제도를 의무 운영하여야 함 	별첨 05
⑤ 기관지원 협약서 <u>(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과제는</u> <u>기관부담금 포함 필수)</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부담금(해당 시) 및 설치공간, 장비전담운영인력, 공동활용, 신속 행정지원 등 기관지원에 대한 협약서 제출 (대학 총장 적인 날인본 제출 필수) ※ 기관부담금은 협약 후 2개월 이내 독립된 계정 개설 및 입금완료 	별첨 06

항 목	작성 시 유의사항	비고
⑥ 지원대상 기관 및 소속 연구자 증빙자료 (자유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과제 지원대상 기관·시설임을 증빙하는 자료 제출 ※ 대학부설연구소, 핵심연구지원센터, 공동실험실습관 지정 증빙 ※ ZEUS 시설 등록 증빙 ※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 증빙 ▶ 연구(책임)자가 본 과제 지원대상 시설에 소속된 연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별첨 07
⑦ 구축 장비별 구축계획서 및 비교견적서 등 ※ 1개의 파일(PDF)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별 구축계획서(신규구축 및 성능향상 포함) ▶ 장비별 비교견적서* 등 제출 * 비교견적서 : 제조사·모델이 다른 동등 사양 견적서 ※ 단일 견적 시 : 단일 견적 및 [별첨 09] 단일견적 사유서 	별첨 08 별첨 09
⑧ 공간이용료 집행계약(확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시설 관련 공간에 대한 이용료(연구인프라 조성비) 집행계약(확약서) 제출 	별첨 10
⑨ 연구장비 구축 완료 이행 확약서 (인프라 고도화 지원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시일 기준 12개월 이내 연구장비 구축 완료 이행에 대한 연구책임자 및 기관 확약서 제출 (대학 총장 직인 날인본 제출 필수) 	별첨 11
⑩ 거점 네트워크 협력기관 참여 의향서 (거점 네트워크 구축 지원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 네트워크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는 의향서 제출 (협력기관장 직인 날인본 제출 필수) 	별첨 12

1 평가절차 및 방법

※ 향후 세부 평가계획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음

□ 선정평가 절차



※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후속지원’ 및 ‘거점 네트워크 구축 지원’은 현장평가 미실시

□ 평가 방법

①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신규지원, 인프라 고도화 지원 과제

- (1차 서면) 전문가 토론(서면)평가를 통해 지원규모 2배수 내외의 2차 평가 대상과제를 추천/비추천으로 선정
- (2차 발표) 분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책임자의 발표 및 질의 응답을 바탕으로 과제별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고득점 순으로 1.5배수 내외의 3차 평가 대상과제를 추천/비추천으로 선정
- (3차 현장) 현장평가를 통해 조성 및 장비구축 예정 공간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예산 규모 및 과제 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과제를 추천

②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후속지원, 거점 네트워크 구축 지원 과제

- (1차 서면) 전문가 토론(서면)평가를 통해 지원규모 1.5배수 내외의 2차 평가 대상과제를 추천/비추천으로 선정
- (2차 발표) 분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책임자의 발표 및 질의

응답을 바탕으로 과제별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과제를 추천

- ☞ 8대 기술분야(연구장비 표준분류체계 참고)별 신청접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평가위원회 분과를 구성하고, 접수 비중을 감안하여 분과별 지원 과제 수 및 예산을 산정
· 특정 기술분야의 신청 과제 수가 과소한 경우, 통합분과 구성 가능
- ☞ 분과별 배정 예산에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 사업운영위원회 및 종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으며, 과제신청 시 요청한 연구비와 최종 확정된 연구비는 예산 사정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평가항목 및 내용

※ 향후 세부 평가계획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음

□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100점 만점)

○ (신규지원)

평가항목	세부항목(평가 주안점)		배점
센터 조성의 필요성 (30)	첨단	■ 조성하고자 하는 센터의 연구분야 및 연구주제가 국가 차원의 혁신적·도전적 R&D 추진방향과 부합하는가?	10
	소외	■ 조성하고자 하는 센터의 연구분야 및 연구주제가 기초과학 다양성 보호를 위해 국가차원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분야인가?	
	지역 특화	■ 조성하고자 하는 센터의 연구분야 및 연구주제가 소재 지역의 지역 특화 산업, 지역 전략기술과 부합하는가?	
		■ 해당 연구분야에서 기존의 분산된 연구 장비의 집적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큰가?	
		■ 해당 연구분야 및 소재 지역에서 공동연구 및 공동활용 측면에서 센터의 조성 필요성이 높은가?	
연구 인프라 및 연구진의 역량 (30)		■ 해당 연구분야에 적합한 연구장비 및 조성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가?	10
		■ 연구책임자는 센터의 운영·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과제관리 역량이 있는가?	10
		■ 센터 연구진의 역량이 우수한 수준의 연구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가?	5
		■ 센터 연구진이 공동연구 및 공동활용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목표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5
센터 구성 및 운영 계획의 타당성 (25)		■ 해당 연구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공동활용을 고려할 때 집적 대상 장비의 종류 및 규모 등 집적 계획이 적절한가?	5
		■ 센터 내 연구장비의 운영 및 관리 계획이 적절한가? ※ 장비의 이전·수리·성능향상 계획, 이용자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계획 등 포함 (전담운영인력 교육·운용 계획 제외)	10
		■ 전담운영인력이 센터 내 연구장비 활용 지원에 필요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운용 계획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5
		■ 본 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적절하게 계상되었는가?	5
센터조성에 따른 공동활용 및 자립화 계획의 적정성 (15)		■ 집적화된 연구장비를 대학 내 타부서, 타 대학 및 타 연구기관 등과 공동활용하는 계획은 적절한가?	10
		■ 센터 관리 및 재정운용 계획이 과제 종료 후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하고 안정적인가? ※ 전담운영인력 고용안정화 방안 포함	5
합계			100

○ (후속지원)

평가항목	세부항목(평가 주안점)		배점
센터 지속의 필요성 (30)	도약형	■ 기 조성 센터가 노후장비 교체(업그레이드) 및 정비 등 지원을 통해 지속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	10
	자립형	■ 기 조성 센터가 자체수입 활성화 등 재정자립 지원을 위해 지속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	
		■ 기 조성 센터의 연구분야 및 연구주제가 국가 차원의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가?	10
		■ 해당 연구분야, 소재 지역에서 공동연구 및 공동활용 측면에서 센터의 지속 필요성이 높은가?	10
연구 인프라 및 연구진의 역량 (20)		■ 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반 인프라(전담운영인력 제외)가 잘 갖추어져 있는가?	10
		■ 연구책임자는 센터의 운영·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과제관리 역량이 있는가?	7
		■ 센터 연구진이 공동연구 및 공동활용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목표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3
센터 구성 및 운영 계획의 타당성 (20)		■ 해당 연구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공동활용을 고려할 때 센터 내 기 집적된 장비의 활용성이 높은가?	5
		■ 센터 내 연구장비의 운영 및 관리 계획이 적절한가? ※ 장비의 이전·수리·성능향상 계획, 이용자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계획 등 포함 (전담운영인력 교육·운용 계획 제외)	5
		■ 전담운영인력이 센터 내 연구장비 활용 지원에 필요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운용 계획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5
		■ 본 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적절하게 계상되었는가?	5
후속지원에 따른 공동활용 및 자립화 계획의 적정성 (30)		■ 센터 내 연구장비의 대학 내 타 부서, 타 대학 및 타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은 적절한가?	10
		■ 센터 내 연구장비 기반 자체수입 증대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가? ※ 활용 수요 확대, 분석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	10
		■ 센터의 관리 및 센터 재정운용 계획이 과제 종료 후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하고 안정적인가? ※ 전담운영인력 고용안정화 방안 포함	10
합계			100

거점 네트워크 구축 지원(100점 만점)

평가항목	세부항목(평가 주안점)	배점
연구거점 구축 지원의 필요성 (20)	■ 연구거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핵심센터·고도화 시설의 연구분야 및 연구주제가 해당 권역의 특화 산업 또는 지역 내 산·학·연 간 네트워크 구축 수요와 부합하는가?	10
	■ 연구거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핵심센터·고도화 시설 기반 연구거점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가?	10
연구 인프라 및 연구진의 역량 (25)	■ 연구거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핵심센터·고도화 시설의 연구장비에 대한 공동연구 및 공동활용 수요가 높은가?	10
	■ 연구책임자는 거점 네트워크의 구축·관리·운영을 총괄할 수 있는 과제관리 역량이 있는가?	7
	■ 핵심센터·고도화 시설 연구진의 역량이 우수한 수준의 연구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가?	3
	■ 핵심센터·고도화 시설 연구진이 공동연구 및 공동활용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 계획과 목표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5
연구거점 구축·운영 계획의 타당성 (25)	■ 해당 연구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공동활용을 고려할 때 집적 대상 장비의 종류 및 규모 등 집적 계획이 적절한가?	5
	■ 핵심센터·고도화 시설 내 연구장비의 운영 및 관리 계획이 적절한가? ※ 장비의 이전·수리·성능향상 계획, 이용자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계획 등 포함 (전담운영인력 교육·운용 계획 제외)	10
	■ 전담운영인력이 핵심센터·고도화 시설 내 연구장비 활용 지원에 필요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운용 계획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5
	■ 본 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적절하게 계상되었는가?	5
연구거점 구축의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30)	■ 연구거점 구축으로 접근성 및 지원분야 유사성 등 측면에서 권역 내 산·학·연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는가?	10
	■ 연구거점 구축으로 지역 간 접근성, 지원분야 유사성 측면에서 핵심센터·고도화 시설 기반 연계 및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가?	10
	■ 핵심센터·고도화 시설을 중심으로 연구거점 기반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원분야에서 우수 연구성과 창출 및 우수 전문인력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되는가?	10
합계		100

인프라 고도화 지원(100점 만점)

평가항목	세부항목(평가 주안점)	배점
첨단연구 장비 구축의 필요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하고자 하는 첨단연구장비를 활용할 연구분야(기초연구, 첨단연구, 전략기술 등) 및 연구주제가 국가 차원에서 집중 투자가 필요한가? ■ 도입하고자 하는 첨단연구장비가 해당 연구분야 및 연구주제에서 글로벌 수준의 연구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가? ※ 도입하고자 하는 장비의 종류 · 사양 · 규모, 동종 · 유사 장비의 설치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 	10
첨단연구 장비도입 여건 및 활용 역량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연구장비를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전담운영인력 제외)가 잘 갖추어져 있는가? ■ 연구책임자는 첨단연구장비 구축 · 관리 · 지원을 총괄할 수 있는 과제관리 역량이 있는가? ■ 첨단연구장비를 활용하는 핵심연구자(진)의 역량이 글로벌 수준의 연구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가? ■ 핵심연구자(진)가 첨단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 기존 전담운영인력이 도입하고자 하는 첨단 연구장비 운용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는가? 	5 5 10 10 5
첨단연구 장비 구축·운영 계획의 타당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기간, 구축 일정, 설치공간(안전기준 검토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첨단연구장비 구축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 첨단연구장비 운영 및 관리 계획이 적절한가? ※ 첨단연구장비 지원 및 활용계획, 이용자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계획 등 포함 (전담운영인력 교육·운용 계획 제외) ■ 전담운영인력이 첨단연구장비 활용 지원에 필요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운용 계획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 본 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적절하게 계상되었는가? 	10 10 5 5
첨단연구 장비 공동활용 및 자립화 계획의 적정성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하고자 하는 첨단연구장비를 대학 내 타부서, 타 대학 및 타 연구기관 등과 공동 활용하는 계획은 적절한가? ■ 첨단연구장비 관련 관리 및 재정운용 계획이 과제 종료 후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하고 안정적인가? ※ 전담운영인력 고용안정화 방안 포함 	10 5
합계		100

V

연구비 지급 및 관리

▶ 신청요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 운영지침」을 따릅니다.

1 연구비 지급

□ 연구비 구성 항목 : 직접비 + 간접비

구분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거점 네트워크 구축 지원 (시범)	인프라 고도화 지원		
	신규지원			후속지원					
	철단 분야	소외 분야	지역 특화	도약형	자립형				
직접비	지원항목		센터운영비			네트워크 구축 운영비	첨단R&D 장비 구축 및 관련 운영비		
	구입 설치비	신규 구축	X*	X*	X*	X	0		
		성능 향상	0	0	X		X		
	운영 유지비	장비 이전	0	0	0	X	0		
		유지 보수	0	0	0		0		
	연구 인프라 조성비		조성비·설계·건축·감리비 부자·시설임차비 (※ 부자·시설 매입비 계상 불가)			X	조성비·설계·건축·감리비 부자·시설임차비 (※ 부자·시설 매입비 계상 불가)		
	인건비	장비 전담	0			0	0		
		행정 전담	0			0	0		
	연구 재료비	0			0		0		
	연구 활동비	장비전담운영인력 육성(교육)·운영 공동활용 활성화, 센터 운영·관리비 등			물리시스템네트워크구성비 네트워크 활성화 거점센터(시설) 운영관리비 등	장비전담운영인력 육성(교육)·운영 공동활용 활성화, 시설 운영·관리비 등			
간접비		간접비고시비율의 50%			간접비고시비율의 50%	간접비고시비율 ※ 장비도입구축비**를 제외한 직접비 기준			
기관부담금 등		정부지원금(간접비 포함)의 10%를 기관부담금(현금)으로 의무 부담 (※ 10% 초과 납부의 경우 서면평가 시 우대)			기관부담금 및 지자체예산 등 매칭 불가	기관부담금 및 지자체예산 등 매칭 불가			
비고		연구수당 계상 가능	연구수당 계상 가능	연구수당 계상 불가	연구수당 계상 불가	연구수당 계상 불가			

* 1억원 미만 연구장비는 기관부담금으로 구축 가능(단, 3천만원 이상은 전문기관 심의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항목 중 ‘다. 연구시설·장비비’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6조(대학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간접비비율을 대학별 간접비 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수 있다.

2. 제37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제37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간접비비율을 정부출연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수 있다.

(중략)

2.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 및 연구개발인프라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중략)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정부출연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

(수정직접비 - 수정직접비 중 수정직접비에 비례하여 간접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용용도에 해당하는 금액)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 ÷ 수정직접비

※ 수정직접비란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

2. 정부출연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직접비 규모별로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차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3. 간접비비율을 5퍼센트로 하는 방법

□ 장비전담운영인력 인건비

과제	장비전담운영인력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	장비전담운영인력 1인 이상이 참여연구원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각 장비전담운영인력의 인건비는 본 과제에서 50% 이상 충당하여야 함 ⑤ 전체 장비전담운영인력 인건비의 합은 직접비의 20% 이상 이어야 함
인프라 고도화 지원	장비전담운영인력 1인 이상이 참여연구원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각 장비전담운영인력의 인건비는 본 과제에서 30% 이상 계상하여야 함 ⑤ 전체 장비전담운영인력 인건비의 합은 첨단R&D 장비 구축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10% 이상 이어야 함

□ 지급방법 및 시기

- 교육부(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와 주관연구기관 간 협약에 따라 NFEC이 주관연구기관에 연구비 지급
- 최종 선정 이후, 협약체결 · 연구비 지급

□ 직접비 변동 발생 시 적용 기준

①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과제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금) 매칭

- 선정평가 및 도입심의 결과에 따른 직접비가 변동되더라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조정 불가

※ (예시) 신청 시 직접비 500백만원(정부지원금 400백만원+기관부담금 100백만원)이었으나, 최종 직접비가 480백만원으로 조정될 시 (정부지원금 380백만원+기관부담금 100백만원)으로 확정

② 인프라 고도화 지원 과제

- 도입심의 결과(도입불인정, 조건부 인정^{*})에 따른 연구비 조정(삭감) 시

* 조건부 인정 : 구축타당성은 인정되나 금액 및 수량에 조정(구축비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 협약변경을 통해 총 연구비를 변경하며, 변경된 연구비 차액은 반납

- 낙찰차액 발생 시, 시설 단위 통합관리계정으로 적립*

* 해당 시설 단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의 상한액 초과 시, 초과분은 반납이 원칙

- 환율변동 등에 따른 구축금액 변동 시

- 도입심의 대비 구축금액 상승 시 주관연구기관에서 부담

- 도입심의 대비 구축금액 하락 시 차액은 시설 단위 통합관리계정으로 적립 또는 반납 처리

2 연구비 사용 및 관리

- 연구비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Ezbaro)을 통해 관리해야 함

※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Ezbaro, <https://www.gaia.go.kr>)

- 사용한 연구비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 연구비 사용과 관리 시 주관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 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제반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과 협약용 연구 계획서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매칭 과제인 경우
 - 연구비 집행 시 기관부담금부터 우선 집행해야 하며, 기관부담금에 대해서는 잔액이 발생할 수 없음
- 연구비 사용내역 보고 및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연구기간 종료일까지 연구비 사용내역 보고
 -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
※ 연구비 정산은 연구기간 종료 시 실시
- 연구비 유용, 직위해제 등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NFEC에 보고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 감사, 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즉시 NFEC에 보고
- 연구비사용액부당회수 금지
 -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비사용액부당회수를 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 시 연구비의 사용용도 위반행위로 보고 협약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처분 실시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3조(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 ①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참여 연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비에서 사용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이하 "연구 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등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를 위반한 행위로 본다.

1 지원중단 과제 관리

-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연구수행 포기 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국가 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에 승인을 요청해야 함
 - 과제 중단 신청 시, 정당한 사유에 관한 기준표^①를 적용하며, 이외의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① 수행포기 신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기준

- 2025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과제 중단 신청 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표를 적용하며,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
- ※ 주관연구기관에서 아래 이외의 사유로 연구수행 포기를 요청할 경우,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연구자 참여제한 등을 심의·확정

구 분		세부내용
신분 변동	이직	타 기관에 채용된 후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과제 관리가 불가능한 기관으로의 이직 등 포함) ※ 연구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의 이직은 정당한 사유로 불인정
	퇴직	재임용 탈락으로 인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단,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불인정)
	공직 등 임명	국공립·사립대학교 총장,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등으로 임명되어 연구수행이 제한된 경우
사망, 질병, 육아 등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장기입원, 질병휴직, 출산·육아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질병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임원) 이력 또는 계획이 기관제출용 진단서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 ※ 출산·육아는 관련 휴직기간이 2년 초과일 경우에 한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
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통하여 수행포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 ※ 수행포기의 사유(불가피성) 및 시점(잔여 연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연구책임자 이직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책임자 변경 및 과제 계속 수행여부를 검토하고, 과제중단 결정 시, 구축된 장비는 ZEUS 나눔터를 통해 해당 장비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타 대학의 연구자에게 이관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연구과제의 수행 포기 시 연구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제재처분 및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②
 - 기준 이외의 사유로 연구 수행 포기를 요청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처분 평가단을 통해 연구자 참여 제한 등을 심의·확정

※ 참여제한이 확정된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 동안 모든 부처의 과제에 선정되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 수행 중인 과제에서도 배제되며, '국가연구개발활동' 일체에 참여를 제한하여 과제수행 외 국가R&D 사업 사전기획, 평가위원 활동 등에도 참여 불가

②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33조제6항에 따라 결정*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제재대상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동법 제33조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에서 제재처분을 최종 결정한 사항

2 성과관리

- 논문, 특히 실적 등 주요 성과는 온라인으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수시로 입력
-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해 운영·관리되어야 하며, ZEUS를 통한 공동활용 실적만 성과로 인정함
 - ZEUS의 공동활용 실적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첨부하여 증빙 가능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연구종료 후 5년간을 성과 활용기간으로 하며 해당기간 동안 시설 및 연구장비, 통합관리 계정 등을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장비 활용 실적, 운영 실적 등 사업 관련 실적을 주기적으로 등록하고, 매년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점검을 통해 계획 대비 실적이 미흡할 경우, 인프라 관련 과제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연구시설·장비를 타 기관으로 이관 조치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하여 공개함
※ 지식재산권 취득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 비공개 승인 요청 가능
- 각종 보고서 및 성과를 허위(중복성 포함)로 기재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실시함

1 논문 사사표기 안내

-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 해당 논문에 사사를 표기해야 함
 - 사사 표기의 경우(※ 사사 미표기 시 성과로 불인정)

▶ 국문 표기

본 연구는 2025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과제번호)

▶ 영문 표기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National research Facilities and Equipment Center) grant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grant No.)

※ 연구는 논문, 특허 등 실제 성과 명칭으로 대체 사용 가능

- 장비 활용의 경우

▶ 실험방법에 장비명 및 시설장비등록번호(NFEC-0000-00-000000) 기입

2 국내·외 파견연구 및 해외 체류 시 사전 승인

- 연구책임자 및 핵심연구자가 국내·외 기관에 연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파견 시 반드시 사전에 NFEC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최소 1개월 전 주관연구기관을 통한 별도의 협약변경 신청 필요
 - ※ 연구개시일 기준 이미 파견 중인 경우, 협약 후 지체없이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에 승인 요청

3 사이버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는 의무적으로 연구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함(※ 미이수 시 각종 보고서 제출 불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알파캠퍼스(<https://alpha-campus.kr>)에서 제공하는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 또는 「참여연구원을 위한 연구윤리」 과정 중 직책과 계열에 해당하는 과정을 필수 이수
 - ※ 인정기간은 이수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1회 수강 필요
 - ※ 교육관련 문의 : 알파캠퍼스 학습지원센터(☎ 1588-5834)

4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수행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 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https://public.irb.or.kr>) 활용(심의 및 면제 신청 문의처: 02-737-8312(의과학연구) / 02-454-9520(사회과학연구) / 02-778-9193(기타연구))

5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등록 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등에 대한 안내

-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 · 등록 시 성과 소유권 안내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에서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식재산권(특허 등)을 출원 · 등록하는 경우 지식재산권(특허 등)은 성과를 개발한 연구자로부터 권리가 승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
- 개인명의 지식재산권(특허 등) 등록에 의한 위반
 - 지식재산권 성과(특허 등)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이름으로 출원 및 등록하는 것은 정부 R&D 관련 법령 위반 행위임※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및 제32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 개인이 소유한 지식재산권 성과 발생시, 즉시 주관연구기관에 그 소유를 양도 조치함※ 단, 주관연구기관이 지식재산권 소유를 포기하는 경우 등 예외의 경우에는 개인이 소유 가능
-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등록 시 연구개발 과제 정보 기재 안내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에서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등)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 과제고유번호, 부처명,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기여율, 주관기관, 연구기간

6 연구노트 작성 안내

-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하는 자료(연구노트)를 작성·관리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운영
 -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 추후 필요 시 연구과제의 질적 성과 및 성실성 평가의 근거로 연구노트 활용 가능

7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안내 사항

-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함
 -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http://www.labs.go.kr>)에서 법령 및 안전정보 내용 확인(연구실 안전법·제도 문의처 : 043-240-6429)

8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 및 검증

-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부정행위 검증, 조치를 위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검증·조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보고해야 함
 -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

9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 연구책임자 등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때, 관련 학계가 신뢰할 수 있는 전전한 학술지(또는 학술대회)를 활용
※ 세부사항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의 “부실학술활동 예방 가이드 안내”(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 알림공간 ▶ 공지사항) 참조

10 특수관계자 참여 관련 안내 사항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와 연구성과물에 미성년저자를 포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함. 단,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수행의 전문성, 활용 필수성 및 대체불가능성 등을 검토

11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인체자원 분양상담 콜센터 :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12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 확인

13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화합물 기탁 안내

-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 특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 화합물의 경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한국화학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부설 한국화합물은행, 042-860-7190)에 기탁하여야 함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4 적용 법령

- 신청요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사항에 따라 「학술진흥법」, 「국가 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을 적용함
※ 관련 법령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불임 1 | 자주 묻는 질문 (FAQ)

FAQ 목차

[신청 및 수행 제한 관련 사항] 34

- [Q01] (공통) ○○과기원에 내 설치된 공동기기원도 본 과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 [Q02] (공통) 전임교원의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도 연구책임자 및 핵심연구자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Q03] (공통) 대학에 소속된 전임교원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한 과제인가요?
- [Q04] (공통) 수행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에 따른 신청 제한이 있나요?
- [Q05] (공통)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신청할 수 있나요?
- [Q06] 대학부설연구소의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 [Q07] 지원대상 기관 중 핵심연구지원센터는 무엇인가요?
- [Q08] 지원대상 기관 중 인프라 고도화 시설은 무엇인가요?
- [Q09] 지원대상(대학부설연구소, 핵심연구지원센터, 공동실험실습관) 기관(시설)의 장만 연구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 [Q10] (공통)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운영하지 않는 기관은 신청이 제한되나요?
- [Q11] 대학별 신청 과제수의 제한이 있나요?
- [Q12] 전임교원으로 임용이 예정되어 있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도 연구책임자나 핵심연구자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Q13] (공통) 외국인도 연구책임자나 핵심연구자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연구비 관련 사항] 36

- [Q14] 연구비 계상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규정과 자료를 참고하면 되나요?
- [Q15] 기관 자체부담금 등의 매칭이 가능한가요? 매칭 시 우대사항이 있나요?
- [Q16] (인프라) 연구장비 구축을 위한 조달과정에서 낙찰차액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운영비로 사용가능한가요?
- [Q17] (인프라) 연구장비 구축비는 1차연도에만 지급되는데 반드시 1차연도에 모든 연구장비 구축비를 소진하고, 장비구축을 완료하여야 하나요?
- [Q18] 연구(근접)지원인력으로 채용된 행정전담인력은 인건비 이외에 다른 비목을 사용할 수 있나요?

[신청서류/접수방법 관련 사항(공통)] 37

- [Q19] (공통) 각 접수기간(연구자 접수, 주관연구기관 승인)을 놓쳤을 경우 구제방법이 있나요?

[Q20] (공통) 계획서 분량의 제한이 있는데, 초과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Q21] (공통) 첨부파일 제출 전·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Q22] (공통) 과제 신청접수 이후 기술분야 및 연구장비 표준분류를 변경할 수 있나요?	
[선정 평가 관련 사항(공통)]	38
[Q23] (핵심연구지원센터) 핵심연구지원센터에 집적하는 장비수가 많으면 과제 선정 시 유리한가요?	
[성과 관리 관련 사항(공통)]	39
[Q24] (공통) 활용 실적에 대한 점검 기준은 무엇인가요?	
[Q25] (공통) 논문이나 특허의 성과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Q26] (공통)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성과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연구장비 구축 관련 사항]	39
[Q27] (인프라) 연구장비의 구축과 운영·관리 시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Q28] (인프라) 과제가 선정되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연구장비의 구축(구매)절차를 바로 진행하면 되나요?	
[Q29] (인프라) 구축(예정)된 연구장비는 어디에 설치하여야 하나요?	
[Q30] (인프라) 구축예정 장비별 비교견적서는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나요?	
[Q31] (인프라) 리스나 렌탈 등 임대의 방식으로 연구장비를 구축해도 되나요?	
[Q32] 구축예정 장비 또는 시스템 장비 중 일부가 보안 상의 사유 등으로 공동활용이 불가능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Q33] 시스템 장비는 반드시 동일공간에 구축되어야 하나요?	
[Q34] (핵심연구지원센터)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하여 성능향상(3천만원 이상)의 경우도 도입심의 대상인가요?	
[전담운영인력 관련 사항(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및 인프라 고도화 지원)]	41
[Q35] (공통) 전담운영인력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본 과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Q36] (공통) 전담운영인력은 반드시 기관에 소속된 정규직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나요? 학생연구원을 지정해도 되나요?	
[IRIS 관련 사항(공통)]	42
[Q37] (공통)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과제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Q38] (공통) 주관연구기관을 산학협력단이 아닌 ‘대학’으로 신청하기를 권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학’이 아닌 ‘산학협력단’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Q39] (공통)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의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로 등록된 동일인을 대학의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로도 등록할 수 있나요?
- [Q40] (공통) 주관연구기관을 대학으로 선택하여 과제를 신청하더라도, 과제 접수 및 협약 등 절차를 진행할 때 NRI 소속기관이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인 직원이 과제관리(검토·승인 등)를 수행할 수 있나요?
- [Q41] (공통) 사업 관련 문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한국연구재단(NRF),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IRIS) 중 어디로 해야 하나요?

[신청 및 수행 제한 관련 사항]

Q01. ○○과학기술원에 내 설치된 공동기기원(연구장비집적화시설)도 본 과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 ☞ 교육부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은 대학의 R&D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직할기관인 4대 과기원(KAIST, GIST, DGIST, UNIST)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Q02. 전임교원의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도 연구책임자 및 핵심연구자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 전임교원의 인정기준은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 통계조사 기준과 동일하며, 기금 교수의 경우, 국·공립대학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되고, 보수 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최소한 조교수 수준) 전일제(full-time) 근무 계약 교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 통계조사 기준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 ①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교원
 - ② 신청마감일 기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 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③ 국·공립 대학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 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수당 등을 지급 받는 교원
 - ④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학과나 학부에 소속되지 않고 교양교육 등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 강의전담교수, 연구전담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소 소속 교원(인문한국사업: HK, 중점연구소사업 등)의 경우도 포함
- ※ 소속학과는 수행하는 업무와 가장 밀접한 학과 또는 학부로 입력 가능
- 국·공립대 기금교수: 대학의 「기금교수운영규정」 등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 ①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수가 아니므로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교원
 - ② 보수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최소 조교수 수준) 전일제(full-time)근무 계약교원
- 인정 제외대상 교원
 - ① 전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 ② 재임용심사자격 미부여 또는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교원
 - ③ 학교교육·지도, 학문연구 및 산학연 협력에 참여하지 않는 교원
 - ④ 학과(부) 학생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 어학원 등에 배치된 교원

Q03. 대학에 소속된 전임교원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한 사업(과제)인가요?

- ☞ 아닙니다. 과제 유형 및 분야별로 지원 대상은 다르며, 해당 유형 시설의 장 또는 소속 연구자만 본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Q04. 수행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에 따른 신청 제한이 있나요?

- ☞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2항제4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개수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 · 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 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Q05.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신청할 수 있나요?

-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지원자격과 무관하게 본 과제의 신청이 불가하며, 사후 적발 시 신청 또는 선정취소 처리합니다. 다만, 참여제한 조치가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 전일('25. 2. 26.(수))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의 참여제한 관련 정보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Q06. 대학부설연구소의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 ☞ 신청마감일('25.2. 26.(수)) 기준으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홈페이지 (www.kci.go.kr)에 '대학부설연구소'로 등록된 기관만 신청대상으로 인정됩니다.

Q07. 지원대상 기관 중 핵심연구지원센터는 무엇인가요?

- ☞ 교육부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의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 과제로 선정되어 '25. 3월 기준 해당 과제 수행 중인 49개 센터만 해당됩니다.

Q08. 지원대상 기관 중 인프라 고도화 시설은 무엇인가요?

- ☞ 교육부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의 '인프라 고도화 지원' 과제로 선정되어 '25. 3월 기준 해당 과제 수행 중인 10개 시설만 해당됩니다.

Q09. 지원대상(대학부설연구소, 핵심연구지원센터, 공동실험실습관) 기관(시설)의 장만 연구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 ☞ 아닙니다. 지원대상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전임교원)라면 연구책임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연구책임자가 반드시 기관의 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Q10.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운영하지 않는 기관은 신청이 제한되나요?

-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은 본 과제 수행을 위한 필수 조건 사항임에 따라, 과제신청 시점에 통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25년도 하반기 이내에 해당 제도를 신청하여 제도운영기관으로 지정받겠다는 확약서([별첨05]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확약서)를 함께 제출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11. 대학별 신청 과제수의 제한이 있나요?

- ☞ 대학별 신청 과제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본과제의 지원대상 과제수가 많지 않음에 따라, 선정평가 시 지역균형 등을 고려하여 동일 대학의 선정 과제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Q12. 전임교원으로 임용이 예정되어 있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도 연구책임자나 핵심연구자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25. 2. 26.(수))을 기준으로 전임교원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신청 가능하며, 과제 총 연구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연구자는 연구책임자나 핵심연구자로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Q13. 외국인도 연구책임자나 핵심연구자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 외국 국적의 연구자는 참여연구자 등록은 가능하나, 연구책임자나 핵심연구자로 신청은 불가합니다.

[연구비 관련 사항]

Q14. 연구비 계상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규정과 자료를 참고하면 되나요?

- ☞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주시면 됩니다. 기타 세부 계상/집행에 관한 사항은 함께 공지되는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및 주관연구 기관에 비치된 「연구비 관리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5. 기관 자체부담금 등의 매칭이 가능한가요? 매칭 시 우대사항이 있나요?

- ☞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과제의 경우, 기관부담금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정부지원금(간접비 포함)의 10%를 현금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약 10% 초과 납부의 경우 기관부담금 비율에 따라 선정(서면) 평가시 우대해 드립니다.

**Q16. 연구장비 구축을 위한 조달과정에서 낙찰차액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운영비로 사용가능한가요?**

- ☞ 낙찰 차액을 운영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시설단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계정에 적립해야 하며, 통합관리계정의 상한액 초과 시, 초과분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17. 인프라 고도화 과제의 장비 구축비는 1차연도에 지급되는데, 반드시 1차연도에 모든 장비 구축비를 소진하고, 장비구축을 완료하여야 하나요?

- ☞ 인프라 고도화 과제는 단계협약(3+2년)되는 과제로 기본적으로 단계 내 이월은 가능합니다. 단, ’25년도 하반기 내 모든 연구장비의 도입심의 및 발주를 완료하고, 1차연도 과제기간(~'26. 2월말) 내 구축 완료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연구책임자는 1차연도 과제기간 내 연구장비 구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즉시 국가연구시설장비 진흥센터(NFEC)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18. 연구(근접)지원인력으로 채용된 행정전담인력은 인건비 이외에 다른 비목을 사용할 수 있나요?

- ☞ 행정지원인력에게는 지원인력 인건비만 지급 가능합니다. 그 외의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 등은 계상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류/접수방법 관련 사항]

Q19. 각 접수기간(연구자 접수, 주관연구기관 승인)을 놓쳤을 경우 구제방법이 있나요?

- ☞ 신청기간과 절차는 모든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에게 공통적인 사항인 만큼, 해당 기한 내에 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주관연구기관 미승인과제에 대해 승인기간 이후에 공문 등을 통해 추가 승인을 요청해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Q20. 계획서 분량의 제한이 있는데, 초과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 분량 초과 시 초과 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평가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 크기나 줄 간격, 자간 등은 자유롭게 하시되, 가독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획서 서식을 임의로 삭제 및 추가하실 수 없습니다.

Q21. 첨부파일 제출 전·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 ① 손상된 파일, 암호화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한글전용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 PDF변환에 실패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제출한 연구계획서의 PDF 변환 실패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사항

1. 파일명에 특수문자를 넣지 않으며, 자소분리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한다.
2. 연구계획서는 권장 폰트로 작성한다.(제목-HY헤드라인M, 본문-휴먼명조, 표-맑은고딕)
3. 파일에 DRM을 적용하거나 암호화하지 않는다.
4. 파일을 업로드하기 전에 읽기, 저장, 미리보기, 인쇄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5.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문서를 불러와서 작성하는 경우 UTF-8로 인코딩한다.
6. 한글파일을 배포용 문서로 저장하지 않는다.
7. Word 파일의 경우, 문서 내 표가 손상되었는지 확인한다.
8. 문서에 인쇄제한, 제한된 보기 설정을 하지 않는다.

- ② 서명 및 직인 날인이 생략된 파일은 유효한 문서로 볼 수 없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니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또한 접수마감 이후 잘못 등록한 파일은 추가 접수 및 교체가 되지 않으므로, 각 첨부파일 항목에 맞게 해당 파일이 제대로 탑재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22. 과제 신청접수 이후 기술분야 및 연구장비 표준분류를 변경할 수 있나요?

- ☞ 접수완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과제 신청 시 선택한 기술분야 및 연구장비 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므로 연구 분야 및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장비의 분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평가 관련 사항]

Q23. (핵심연구지원센터) 핵심연구지원센터에 집적하는 장비수가 많으면 과제 선정 시 유리한가요?

- ☞ 무조건적으로 집적하는 장비 수가 많다고 하여 선정 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연구분야별로 적정 집적 규모가 다양하므로, 연구분야별 적정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지원 금액을 통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센터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성과 관리 관련 사항]

Q24. 활용 실적에 대한 점검 기준은 무엇인가요?

- ☞ 기초연구역량강화사업의 실적은 과학적 성과와 장비활용 성과에 대해 점검합니다. 과학적 성과는 논문·특허 등의 양적·질적 성과를 점검하고, 장비활용 성과는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한 장비의 운영일지 및 공동활용 건수 등을 점검합니다. 실적 달성을 기준은 연구자가 제시한 연차별 목표에 대한 달성을 판단하며, 실적이 계속하여 미흡할 경우, 과제 지원종료 및 구축장비의 타 기관 이전 조치될 수 있습니다.

Q25. 논문이나 특허의 성과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준 정량적 연구개발 성과 분류(논문·특허 포함)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상에 수시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Q26.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성과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 ☞ ①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서 시설 단위로 클라우드를 생성하여 등록된 연구시설·장비를 운영·관리 합니다.
- ② 연구시설·장비 활용실적은 과제기간 내 ‘분석완료’로 분류된 건들만 성과로 인정되며, 클라우드 관리자 화면에서 공동활용 건수, 시간, 시료수 등의 정보를 조회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 ③ 이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공동활용 건수, 시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캡처본을 첨부하여 실적을 등록합니다.

[연구장비 구축 관련 사항]

Q27. 연구장비의 구축과 운영·관리 시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 ☞ 국가R&D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구매하여야 하고,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합니다.

Q28. 과제가 선정되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연구장비의 구축(구매)절차를 바로 진행하면 되나요?

- ☞ 과제가 선정된 이후,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구축타당성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연구장비의 구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9조(심의대상)

-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를 심의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이때, 연구시설장비의 구축비용과 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설비비용 등의 부대비용 전체를 총구축비용으로 산정하며, 하나의 연구시설 장비로 심의한다.

Q29. 구축(예정)된 연구장비는 어디에 설치하여야 하나요?

- ☞ ‘인프라 고도화 지원’ 과제는 고가의 첨단R&D 장비 구축을 지원하여 대학의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고, 이를 이용한 글로벌 수준의 연구 및 타 부서, 타 대학, 타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과제임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시설)에 구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30. 구축예정 장비별 비교견적서는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나요?

- ☞ 선정평가 시 구축예정 장비의 구축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장비별 제조사가 다른 2건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비교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일견적과 함께 연구책임자의 날인이 포함된 ‘[별첨09] 단일견적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Q31. 리스나 렌탈 등 임대의 방식으로 연구장비를 구축해도 되나요?

- ☞ 본 과제를 통해 구축(예정)되는 장비는 구매를 통한 구축방식만 인정됩니다. 리스, 렌탈 등 임대방식의 구축은 불가합니다.

Q32. 구축예정 장비 또는 시스템 장비 중 일부가 보안상의 사유 등으로 공동활용이 불가능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 ☞ 본 과제로 구축되는 장비는 공동활용이 필수입니다. 단, 안전 및 보안 등의 사유로 인한 공동활용 불가, 또는 단독활용이 필수인 경우, 연구계획서 내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선정평가에서 승인될 경우 공동활용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3. 시스템 장비는 반드시 동일공간에 구축되어야 하나요?

- ☞ 시스템 장비의 경우, 동일공간 구축이 원칙이나, 선정평가 시 타 공간 구축 사유 또는 동일공간 구축불가능 사유 등이 인정되면 타 공간에 구축이 가능 합니다.

Q34. (핵심연구지원센터)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하여 성능향상(3천만원 이상)의 경우도 도입심의 대상인가요?

- ☞ 정부출연금으로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성능향상 포함) 때에는 반드시 연구개발평가단(전문운영기관)의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과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성능향상 계획이 있는 경우, 과제계획 변경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비전담운영인력 관련 사항][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및 인프라 고도화 지원]

Q35. 장비전담운영인력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본 과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 ☞ 장비전담운영인력은 시설에 소속되어 본 과제를 통해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전담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제 필수 참여자로 반드시 1명 이상의 장비 전담운영인력이 본 과제에 포함(또는 고용계획 제출)되어야 합니다.

**Q36. 장비전담운영인력은 반드시 기관에 소속된 정규직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나요?
학생연구원을 지정해도 되나요?**

- ☞ 시설에 기 고용된 인력을 본 과제의 장비전담운영인력으로 지정할 시, 정규직을 지정하거나, 비정규직을 지정할 경우에는 1단계 사업 수행 기간(3년)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신규 고용의 경우도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고용하거나 1단계 사업 수행 기간(3년)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학생연구원, 인턴, 파견직원 등은 장비전담운영인력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IRIS 관련 사항]

Q37.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과제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 IRIS는 한국연구재단의 e-R&D와 같은 역할을 하고, IRIS 내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은 기존의 한국연구자정보(KRI)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각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IRIS 회원가입부터 연구자전환 등의 및 NRI 연구자 정보 등을 미리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IRIS를 통한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의 대표자가 필수입력 정보 이므로 주관연구기관 총괄담당자가 대표자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01-1]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및 [별첨(매뉴얼)01-2]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Q38. 주관연구기관을 산학협력단이 아닌 ‘대학’으로 신청하기를 권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학’이 아닌 ‘산학협력단’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IRIS 과제 신청 시에도 연구책임자의 NRI 소속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대학’으로 기관정보 등록이 완료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연구책임자가 과제 신청을 진행·완료할 수 없으므로 기관총괄담당자는 반드시 과제접수 시작 전에 기관 정보 등록을 완료하여 주셔야 합니다. 만약 접수마감 기간이 임박하여 기관정보를 ‘대학’으로 변경하기가 어려울 경우, ‘산학협력단’으로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Q39.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의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로 등록된 동일인을 대학의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로도 등록할 수 있나요?

- ☞ 중복지정은 불가능합니다. 한명의 NRI 소속기관은 다수로 등록할 수 없으며, 등록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과 NRI 소속기관이 동일한 인력만 해당 기관의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대학과 산학협력단의 기관정보를 각각 등록하기 위해서는 2명의 대표자(예: A대학 홍OO, A대학 산학협력단 김OO)와 2명의 기관총괄 담당자(예: A대학 이OO, A대학 산학협력단 박OO)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기관총괄담당자가 아닌 기관담당자는 여러 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 정보가 일치하는 담당자에게만 기관담당자 역할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Q40. 주관연구기관을 대학으로 선택하여 과제를 신청하더라도, 과제 접수 및 협약 등 절차를 진행할 때 NRI 소속기관이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인 직원이 과제관리(검토·승인 등)를 수행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NRI 소속기관 정보가 ‘A대학’이 아닌 ‘A대학 산학협력단’으로 등록된 인력은 ‘A대학 산학협력단’의 기관담당자 권한만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IRIS에서 별도 조치를 해 두었기 때문에 ‘A대학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는 ‘A대학 산학협력단’ 뿐만 아니라 ‘A대학’의 과제까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단, 반대로 ‘A대학’ 기관담당자에게는 주관연구기관을 ‘A대학’으로 신청한 과제의 접수 및 협약 등에 필요한 기관 승인권한만 부여되며, ‘A대학 산학협력단’ 과제에 대해서는 승인권한이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1. 사업 관련 문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한국연구재단(NRF),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IRIS) 중 어디로 해야 하나요?

☞ 교육부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 및 세부과제를 담당하는 전문운영기관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이므로, 사업 및 평가 관련 문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융합인프라실(042-865-3981, 3956, 3975, 3691)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다만, IRIS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운영함에 따라 시스템 관련 문의는 IRIS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게시판(알림·고객 > 시스템·서비스문의 > 사용문의)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제20조제1항 관련)

1. 직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다. 연구시설·장비비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
라.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마.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연구개발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사. 연구개발부담비	가)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나)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아. 연구활동비	<p>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 · 특허 · 표준 정보 조사 · 분석, 원천 · 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p> <p>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p> <p>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 · 세미나 개최 비용</p> <p>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p> <p>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 · 설치 · 임차 · 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 · 네트워크의 이용료</p> <p>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 · 설치 · 임차 · 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 · 비품의 구입 · 유지 비용</p> <p>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 · 훈련 비용, 학회 · 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p> <p>아)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외국에 소재한 정부 · 기관 ·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 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p> <p>자)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 · 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p> <p>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p> <p>카)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 · 복사 ·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p>
자.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차. 보안수당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연구자(학생 연구자를 포함한다) 및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2. 간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력지원비	<p>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p> <p>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p> <p>2의2) 대학등의 장이 박사후연구자에게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p> <p> 가)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p> <p> 나)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p> <p>3) 제1호나목2)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p> <p> 가) 3개월 이상의 교육 · 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p> <p>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p>

	<p>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p> <p>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p>
나. 연구지원비	<p>1) 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p> <p>2)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p> <p>3)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p> <p>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p> <p>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p> <p>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p> <p>4)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p> <p>4의2) 학생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p> <p>5)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p> <p>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 보안 활동 관련 비용</p> <p>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차 관련 비용</p> <p>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p> <p>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p> <p>6)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p> <p>7)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p>
다. 성과활용 지원비	<p>1)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p> <p>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p> <p> 나)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p> <p> 다) 홍보전문가 양성</p> <p>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p> <p>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p> <p>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p> <p>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p> <p>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p> <p> 라)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p> <p>3)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p>

비고

1.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 · 학사학위과정 · 석사학위과정 · 학석사통합과정 · 박사학위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학술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2. "연구개발서비스"란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구개발 서비스를 말한다.
- 2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
- 2의3. “박사후연구자”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사람(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4. “학교기업”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을 말한다.
 5.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불임 3 | 기술분야 및 연구장비 표준분류체계

□ 기술분야 및 연구장비 표준분류 선택

- 과제 신청 시 선택한 기술분야 및 연구장비 표준분류 등을 기준으로 선정 평가위원회^{*}가 구성되므로, 연구 분야 및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장비의 분류에 맞게 선택 요망

* 선정평가 대상 과제의 기술분야별 신청현황 등에 따라 분과를 조정(분리, 병합 등)하여 평가분과를 구성할 수 있음

- 연구계획서 제출 시 연구 기술분야 및 연구장비 표준분류를 각각 선택

〈기술분야 및 연구장비 표준분류〉

구분	기술분야	구분	표준분류체계
1	기초과학	1	광학·전자·영상장비
2	생명	2	화합물·전처리·분석장비
3	해양	3	기계가공·시험장비
4	우주·천문	4	전기·전자장비
5	에너지	5	데이터 처리장비
6	환경	6	물리적 측정장비
7	기계부품소재	7	임상의료장비
8	정보전자통신	8	환경조성·사육시설

※ 표준분류체계 상세 사항은 [참고]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 참조

불임 4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안내

□ 추진 목적

- 연구개발과제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를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과제 공백기에도 원활하고 지속적인 연구시설·장비 활용

통합관리제 적용 前	통합관리제 적용 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 기간 중에만 해당 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 기간 중에 과제비 중 일부를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로 계상하고, 기관 내 통합관리계정에 적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 종료 후에는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가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립한 통합연구시설·장비비로 과제 기간과 무관하게 과제 수행 중이나 종료 후에 기관 내 연구시설·장비의 안정적인 유지·보수에 활용 가능

□ 주요 내용

- (통합관리기관 지정) 과제 단위로 관리·사용하던 연구시설·장비비를 연구개발 기관, 공동활용시설,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
 - 통합관리기관은 과제 기간 내 별도 통합관리계정*에 연구시설·장비의 운영비를 적립하여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 가능
 - * 통합관리계정 : 연구개발기관, 공동활용시설,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 가능
-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적립) 과제별 수정직접비*의 10% 이내를 통합관리 계정에 적립 가능
 - * 과제의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등을 제외한 금액
 - 계정별 적립한도 : 연구개발기관(10억원), 공동활용시설(7억원), 연구책임자(3억원)
 - 연구책임자는 최초 협약 시 통합연구시설·장비비 계상 여부를 결정하고, 협약 변경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3조 2항 개정
 - 적립된 통합연구시설·장비비는 정산이 면제되고 이월 허용됨
-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사용) 아래 3가지 용도로만 사용 가능

-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점검, 수리, 부품교체, 품질보증약정, 유지보수계약 등)
 - 연구시설·장비 임차 계약 연장(기존 R&D 과제에서 임차한 장비)
 - 연구시설·장비 이전·설치(기관 내 재배치, 기관 간 양도)
 - ※ 사용대상 : ①국가 R&D 재원으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 ②비R&D 재원으로 구축 됐지만, 국가 R&D 과제 수행에 활용된 것이 확인된 연구시설·장비 중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하 '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
- (운영현황 점검) 통합관리기관은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통합연구시설·장비비가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하고 연 1회 이상 자체점검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관리기관의 운영현황을 점검 및 관리·감독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